

#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 한국항공대학교

##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 내에 시설 관리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대하여 그 설치, 운영절차를 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이하 '정보주체라 함)의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 책임관의 지정)** 본 대학의 CCTV 총괄 책임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관으로 겸보하고 운영 책임자는 총무팀장으로 담당부서는 총무팀으로 한다.

**제3조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 등)** 본 대학에서 설치, 운영되는 CCTV의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 등 설치운영 현황은 홈페이지상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공시한다.

**제4조 (안내판의 설치)** 운영 책임자는 CCTV가 설치된 각 건물 출입구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기한 CCTV 안내판을 설치하여 모든 구성원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제5조 (화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또는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단, 다음 각 호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3. 기타 학교운영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7조 (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명시한 보

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8조 (열람장소 및 출입통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 열람 시 그 장소는 보안이 유지되는 밀폐된 공간이어야 하며 녹화 및 재생되는 장소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제9조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총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 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정보 이용, 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및 형태
7.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제10조 (준용)** 기타 본 대학교 CCTV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